

태왕THE아너스 오페라 [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]

■ 기본 서류 [모든 계약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('21.06.30)이후 발행분에 한함]

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	해당			
○		무주택 서약서	본인	• 건본주택비치
○		다자녀배점기준표	-	• 건본주택 비치
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○		인감증명서&도장	본인	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)
○		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
	○	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 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 기재사항 표시
○		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본인	• 성명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 기재사항 표시
	○		직계존속	• 직계존속이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 사항(최근3년 이상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
○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확인
	○		배우자	•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• 3세대이상 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
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•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-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
	○		직계존속	•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)
	○		직계비속	• 피부양 미혼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) ※ 단,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- 30세 미만 미혼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30세 이상 미혼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
	○		세대원	•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발급) - 발급기간 :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
○	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직계비속	• 만 18세 이상 미혼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임신증명서류 (출산증명서)		•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
	○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(배우자)	• 건본주택 비치
	○			입양관계증명서 (친양자 입양 관계증명서)
	○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•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(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)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-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을 명시
○		자금조달계획서	-	• 모든 주택형 제출

■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

- 위임장,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 1통(아파트 계약 위임 본인발급용) , 대리인 신분증, 대리인 도장(서명)

태왕THE아너스 오페라 [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]

■ 다자녀 배점 기준표

평점요소	총배점	배점기준		비고
		기준	점수	
계	100			
(1) 미성년자녀수	40	5명 이상	40	• 자녀(태어나 입양아를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
		4명	35	
		3명	30	
(2) 영유아자녀수	15	3명 이상	15	• 영유아(태어나 입양아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
		2명	10	
		1명	5	
(3) 세대구성	5	3세대 이상	5	•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
		한부모 가족	5	• 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
(4) 무주택기간	20	10년 이상	20	• 배우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• 청약자가 성년(만 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5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10	
(5) 해당 시·도 거주기간	15	10년 이상	15	• 공급신청자가 성년자(만 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• 시는 광역시·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·도로 봄.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0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5	
(6) 입주자 저축가입기간	5	10년 이상	5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,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

(1), (2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[이혼·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(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)에 한함]

(3) :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

(3), (4) :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적용

(4), (5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

(6) :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(인터넷 청약신청자는 가입확인서 제출 생략)

※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·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

※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바람

※ 동점자 처리

(1)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(2)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